????

아 산 제 2 테 크 노 밸 리

건 축 물 등 에 관 한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산업시설용지
- 물류시설용지
- 지원시설용지
- 주 차 장
- 공 원
- 완 충 녹 지
- 수질오염방지시설
- 전기공급설비
- 유 수 지
- 보행자전용도로
- 획지선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전면공지

용 도	용적률(%이하)	최고층수(층이하)
	건폐율(%이하) (기준/완화)	-

■ 건축물 용도

도면번호	용 도
A1~A19 (산업시설용지)	- 공장(부대시설 포함) - 지식산업센터[단, 제1종,2종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, 장의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허용] - 창고시설(물류터미널 제외)
B11 (물류시설용지)	-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 제외)
B1~10 (지원시설용지)	-「아산시 도시계획조례」별표13에서 규정하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
주 (주차장용지)	-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※ 주차전용건축물 입지불허(주1, 주3, 주5만 해당)
전 (전기공급시설용지)	-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제17호 규정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송전선로
수 (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)	- 오·폐수펌프시설

N

S = 1 : 3,000

0 50 100 200 400m